



< 수시 공시 >

2010. 03. 11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
1	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5 호(채권혼합)
2	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6 호(채권혼합)
3	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9 호(채권혼합)
4	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0 호(채권혼합)
5	신영플러스안정형 증권 투자회사 11 호(채권혼합)

2. 공시 사유 :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3. 주요 변경 내용

- 1) 투자대상의 구체화 : 주식, 집합투자증권,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변경 및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투자제한 등 변경
- 2) 매입 및 환매 기준가격, 지급일 late trading 적용
- 3) 법 시행령 개정사항, 세법 개정사항 등 반영
- 4)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

4. 변경시행일 : 2010.03.11.(목)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